하남 포웰시티 B6 BL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03.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8. 4. 26.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입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의거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자(2017. 4.26.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일반공급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이상 거주한자(2017.10.26.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20%를 공급(하남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6개월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택지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이상인 경우에 한정)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청약 접수시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수의 100%를 가점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수의 50%를 가점제, 50%를 추첨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함.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illstat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하남시)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의 당해 사업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며, 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 규칙 제2조 7호의 각목
-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즉, 지역(직장)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입주대상자는 각각 사업계획승인일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자격이 제한됨. (단, 사업계획승인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 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전역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부산기장군(민간택지는 제외됨) – 공공택지 / 부산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부산진구 – 전역
  -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분당구 · 대구 수성구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조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청약통장으로 신청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6항에 따라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및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모집공고일 현재) 이상인 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국내에 거주 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 복무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가능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일로부터 5년, 전용면적 85㎡초과는 당첨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해당,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재당첨이 제한됩니다.(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 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후, 접수하여 당첨자 발표 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본 아파트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확장형 기준 84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8.03.2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주요 일정

공고	접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계 약 (본 당첨자만 해당)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특별공급	일반공급		
2018. 04. 26(목)	2018.05.02(수) (10:00~14:00)	2018.05.03(목) (08:00~17:30)	2018.05.04(금) (08:00~17:30)	2018.05.02(수) (17:00 이후)	2018.05.11(금) (08:00~17:30)	2018.05.14.(월)~05.19(토) (10:00~17:00)	2018.05.23.(수)~05.25(금) 2018.05.28.(월)~05.29(화) (10:00~17:00)
현대건설홈페이지 (www.hillstate.co.kr)	[견본주택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견본주택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 결과는 2018.5.11.(금) 발표	*견본주택 *현대건설 홈페이지 (www.hillstate.co.kr)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견본주택 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2-9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 주택과 – 16736호(2018. 4. 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B6 BL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29~30층, 총 6개동, 총 9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93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9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93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7세대 포함]

■ 공급 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공동주택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저층 우선 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민영 주택	2018000601-01	73.8110	73	73.8110	24.1008	97.9118	42.2422	140.1540	44.2915	470	47	47	47	14	315	16
	2018000601-02	84.4259	84	84.4259	26.8249	111.2508	48.3170	159.5678	50.6611	462	46	46	46	13	311	16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공급 세대 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0%)	2차(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2018.06.25	2018.09.20	2019.01.21	2019.05.20	2019.09.20	2020.01.20	2020.06.22	
73.8110	470	602동4호 603동4,5,6호 604동1,2,3호 605동1,2,3호	1층	5	237,573,450	214,426,550	452,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92,000,000
			2층	10	237,573,450	219,426,550	457,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97,000,000
			3층	10	237,573,450	224,426,550	462,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94,000,000
			4층	10	237,573,450	228,426,550	46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98,000,000
			5~9층	50	237,573,450	243,426,550	481,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97,000,000
			10~19층	100	237,573,450	253,426,550	491,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99,000,000
			20층이상	106	237,573,450	263,426,550	501,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01,000,000
		604동4,5,6호 605동4,5,6호	1층	5	237,573,450	228,426,550	46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98,000,000
			2층	6	237,573,450	234,426,550	472,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96,000,000
			3층	6	237,573,450	239,426,550	47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01,000,000
			4층	6	237,573,450	244,426,550	482,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98,000,000
			5~9층	30	237,573,450	259,426,550	497,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05,000,000
			10~19층	60	237,573,450	269,426,550	507,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07,000,000
			20층이상	66	237,573,450	279,426,550	517,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09,000,000
84.4259	462	606동1호	1층	1	271,739,000	228,261,000	50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00,000,000
			2층	1	271,739,000	234,261,000	506,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06,000,000
			3층	1	271,739,000	239,261,000	51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03,000,000
			4층	1	271,739,000	245,261,000	517,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09,000,000
			5~9층	5	271,739,000	260,261,000	532,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08,000,000
			10~19층	10	271,739,000	271,261,000	543,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11,000,000
			20층이상	11	271,739,000	283,261,000	5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15,000,000
		601동1,2,3,4호 602동1,2,3호 603동1,2,3호 606동2,3,4,5,6호	1층	7	271,739,000	244,261,000	516,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08,000,000
			2층	15	271,739,000	249,261,000	521,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05,000,000
			3층	15	271,739,000	254,261,000	526,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10,000,000
			4층	15	271,739,000	260,261,000	532,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08,000,000
			5~9층	75	271,739,000	277,261,000	549,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17,000,000
			10~19층	150	271,739,000	288,261,000	560,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12,000,000
			20층이상	155	271,739,000	300,261,000	572,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16,0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73.8110	84.4259
약식표시	73	84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남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실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람.(주택법시행령 제60조)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등]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5자리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향후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중도금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 및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및 잔금 선납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격이 적용됨. • 본 아파트의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선납에 대한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최하층 주택배정 세대는 1층에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등으로 일반분양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을 최하층으로 함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73	84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하남시 1년이상 거주자(30%)	15	14	29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9	9	18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 경기도 6개월미만 거주자(50%)	23	23	4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24	23	47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3	23	46
신혼부부 특별공급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30%)	15	14	29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9	9	18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경기도 6개월미만 거주자 (50%)	23	23	46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30%)	4	4	8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3	3	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경기도 6개월미만 거주자(50%)	7	6	13
합 계		155	151	30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청약 불가, 또한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 · 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주의 형제 · 자매 · 장인 · 장모 · 시아버지 · 시어머니 · 며느리 · 사위 · 친척 · 지인 등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은 특별공급 신청자격 없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철거주택소유자,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다자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청약바람.(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당첨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등)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대상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등) 특별공급 대상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 (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주와 다른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관한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17호, 2018.02.26. 개정)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하남 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미달시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한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한 경우 입양신고일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지정기간개시일 전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임신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입주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공급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를 정함 (1)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1) 미성년인(태아를 포함) 자녀수가 많은 자 (2) 미성년 자녀수(태아를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 2 순위자로 인정되나,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선정시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수도 포함(단, 신청자 및 현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제한이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는 신청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5조에 따라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공급함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견본주택 내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석에 비치) ※ 가점기준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하나, 추첨일의 상황에 따라 당사에서 임의로 추첨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하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거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기관추첨)특별공급은 기관별로 배정된 세대수로 추천받음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_별표1

배 점 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임신중에 있는 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0년미만	15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5년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인천 · 경기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구분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02,590원 이하	5,846,903원 이하	5,846,9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6,003,108원 이하	7,016,284원 이하	7,016,284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성년인 직계존 · 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므로 전 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 · 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견본주택에서는 당첨자만 선정함(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 입회하에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세대는 일반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유의사항	–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 04. 26.)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하남시 1년 이상(2017.04.26.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이상 (2017.10.26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거주자에게 공급함. 동일 순위 내에서 하남시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수도권 접수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배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차순위 공급세대 배분방식과 공급순서 또한 선순위와 동일함)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본 주택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 47조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 가능)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접수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증액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1순위 당해지역 거주자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해당지역 계속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제한됨.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예: 수원시 → 하남시)에는 합산이 가능하나, 경기도 외 타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으로 전입한 경우(예 : 하남시 → 서울특별시→ 하남시)에는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하여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경기도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하나,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85㎡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추첨제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하남시 (1년이상거주) / 경기도 (6개월이상거주)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미만 거주)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하남시 및 경기도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면적 변경없이 청약가능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신 청 자 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봄.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 청약 가점 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 가점제 점수는 상기의 "가점점수 선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산정 함.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하남시 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단, 만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가점제 신청자에게 공급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초과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제로, 50%를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함. • 본 주택은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가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하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거주자에게 공급함.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하남 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 청약자(하남 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 포함) 중 낙첨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동일 순위 내에서 하남시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수도권 접수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배율을 적용 배부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차순위 공급세대 배분방식과 공급순서 또한 선순위와 동일함.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가점제 청약접수자 미달시 추첨제 청약접수자가 입주자로 선정됨)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가점제로 입주자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자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 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하고,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hillstate.co.kr)에 공개함.

IV 청약 신청방법

■ 특별공급 청약 방법

구 분	신청 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신청 방법
특별공급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하남시/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018.05.2.(수) 10:00 ~ 14:00	견본주택 방문 접수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 자격요건과 특별공급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특별공급 신청일에 견본주택으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람) • 신청장소 : 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2-9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 (서약서로 대체)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각 해당기관에서 선정해 당사에 통보된 추천명단 대상자에 한해서만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신청 자격을 인정함.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로 접수 불가) (관련기관 →사업주체 일괄 명단 통보시 추천서등 불필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증이 모집공고일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가능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 · 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표 소득증빙서류 참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당사견본주택 비치)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함.

■ 일반공급 청약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2순위)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구 분	신청 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일반공급	1순위	하남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018. 05. 03(목)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2순위		2018. 05 04(금) 08:00 ~ 17:30		

※ 1순위 청약시 유의사항
–"해당지역(하남시,경기도)"에 전입제한일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하남시,경기도)" 거주자라 하더라도 전입제한일 이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 (위반시 부적격처리)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 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분		구 비 사 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일정

구 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특별공급	• 일시 : 2018.05.02.(수) 17:00시 이후 • 장소 : 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게재 ※ 특별공급 청약신청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추첨 이후 견본주택 내 당첨자 리스트 게재	• 일시 : 2018.05.11(금)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개별조회) : www.apt2you.com(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당사 홈페이지(www.hillstate.co.kr)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의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됨
일반공급	• 일시 : 2018. 05.11 (금) • 장소 : 당사 홈페이지 게재 (예비 당첨자 포함)	

※ 특별공급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 · 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에서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하남 포웰시티 C2 BL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03.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8.04.26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민영주택)입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의거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자(2017.04.26.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일반공급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이상 거주한자(2017.10.26.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20%를 공급(하남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6개월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택지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이상인 경우에 한정)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청약 접수시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수의 100%를 가점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수의 50%를 가점제, 50%를 추첨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함.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재26조 제1항에 의거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illstat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하남시)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의 당해 사업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며, 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 규칙 제2조 7호의 각목
-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즉, 지역(직장)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입주대상자는 각각 사업계획승인일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자격이 제한됨. (단, 사업계획승인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 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전역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부산기장군(민간택지는 제외됨) – 공공택지 / 부산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부산진구 – 전역
  -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분당구 · 대구 수성구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조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6항에 따라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및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모집공고일 현재) 이상인 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국내에 거주 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 복무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가능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일로부터 5년, 전용면적 85㎡초과는 당첨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해당,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재당첨이 제한됩니다.(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 하여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후, 접수하여 당첨자 발표 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본 아파트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확장형 기준 99A, 99B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8.03.2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주요 일정

공고	접수 특별공급	접수 1순위	접수 2순위	당첨자 발표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계약(본 당첨자만 해당)
2018. 04. 26(목)	2018.05.02(수) (10:00~14:00)	2018.05.03(목) (08:00~17:30)	2018.05.04(금) (08:00~17:30)	2018.05.02(수) (17:00 이후)	2018.05.11(금) (08:00~17:30)	2018.05.14.(월)~05.19(토) (10:00~17:00)	2018.05.23.(수)~05.25(금) 2018.05.28.(월)~05.29(화) (10:00~17:00)
현대건설홈페이지 (www.hillstate.co.kr)	[견본주택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견본주택 *특별공급 동 · 호수 추첨 결과는 2018.5.11.(금) 발표	*견본주택 *현대건설 홈페이지 (www.hillstate.co.kr)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견본주택 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2-9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 주택과 – 16735호(2018. 04. 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C2 BL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15~29층, 총 9개동, 총 88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4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구분	공동주택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약식 표기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공용	세대별 공급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계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일반공급	저층우선 배정세대
민영주택	2018000602-01	90.8184A	90A	90.8184	25.6565	116.4749	51.4889	167.9638	52.9300	450	45	13	392	16
	2018000602-02	99.6429A	99A	99.6429	28.0916	127.7345	56.4919	184.2264	58.0700	332	33	9	290	9
	2018000602-03	99.4327B	99B	99.4327	28.5920	128.0247	56.3727	184.3974	57.9500	84	8	2	74	4
	2018000602-04	125.8820	125	125.8820	36.8880	162.7700	71.3681	234.1381	73.3600	7	0	0	7	0
	2018000602-05	152.5154	152	152.5154	47.4544	199.9698	86.4678	286.4376	88.8800	8	0	0	8	0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공급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공급금액 건축비	공급금액 VAT	공급금액 계	계약금(20%) 1차(10%) 계약시	계약금(20%) 2차(10%) 2018.06.25	중도금(60%) 1회(10%) 2018.09.20	중도금(60%) 2회(10%) 2019.02.20	중도금(60%) 3회(10%) 2019.07.22	중도금(60%) 4회(10%) 2019.12.20	중도금(60%) 5회(10%) 2020.04.20	중도금(60%) 6회(10%) 2020.09.22	잔금(20%) 입주지정일
90.8184A	450	207동3,4호 208동1,2,3,4호 209동1,2,3,4호	1층	8	281,627,000	227,611,819	22,761,181	532,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08,000,000
			2층	10	281,627,000	233,066,364	23,306,636	538,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14,000,000
			3층	10	281,627,000	237,611,819	23,761,181	543,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11,000,000
			4층	10	281,627,000	243,066,364	24,306,636	549,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17,000,000
			5~9층	50	281,627,000	258,520,910	25,852,090	56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18,000,000
			10~19층	100	281,627,000	269,430,000	26,943,000	578,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22,000,000
			20층이상	100	281,627,000	280,339,091	28,033,909	590,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118,000,000
		201동1,2,3,4호 207동1,2호	1층	2	281,627,000	242,157,273	24,215,727	548,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16,000,000
			2층	6	281,627,000	247,611,819	24,761,181	554,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14,000,000
			3층	6	281,627,000	253,066,364	25,306,636	560,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12,000,000
			4층	6	281,627,000	258,520,910	25,852,090	56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18,000,000
			5~9층	30	281,627,000	274,884,546	27,488,454	584,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20,000,000
			10~19층	60	281,627,000	285,793,637	28,579,363	596,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124,000,000
			20층이상	52	281,627,000	296,702,728	29,670,272	608,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28,000,000
99.6429A	332	202동1,2,3,4호 203동1,2,3,4호 206동3,4호	1층	4	308,975,000	275,477,273	27,547,727	612,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24,000,000
			2층	10	308,975,000	280,931,819	28,093,181	618,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30,000,000
			3층	10	308,975,000	287,295,455	28,729,545	625,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129,000,000
			4층	10	308,975,000	293,659,091	29,365,909	632,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128,000,000
			5~9층	50	308,975,000	311,840,910	31,184,090	652,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132,000,000
			10~19층	100	308,975,000	323,659,091	32,365,909	665,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137,000,000
			20층이상	46	308,975,000	335,477,273	33,547,727	678,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142,000,000
		205동1,2,3,4호 206동1,2호	2층	6	308,975,000	292,750,000	29,275,000	631,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127,000,000
			3층	6	308,975,000	299,113,637	29,911,363	638,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134,000,000
			4층	6	308,975,000	305,477,273	30,547,727	645,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133,000,000
			5~9층	30	308,975,000	323,659,091	32,365,909	665,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137,000,000
			10~19층	50	308,975,000	336,386,364	33,638,636	679,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143,000,000
			20층이상	4	308,975,000	349,113,637	34,911,363	693,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141,000,000
99.4327B	84	204동2,3,4호	2층	3	308,337,000	281,511,819	28,151,181	618,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30,000,000
			3층	3	308,337,000	287,875,455	28,787,545	625,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129,000,000
			4층	3	308,337,000	294,239,091	29,423,909	632,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128,000,000
			5~9층	15	308,337,000	312,420,910	31,242,090	652,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132,000,000
			10~19층	30	308,337,000	324,239,091	32,423,909	665,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137,000,000
			20층이상	9	308,337,000	336,057,273	33,605,727	678,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142,000,000
		204동1호	2층	1	308,337,000	286,966,364	28,696,636	624,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128,000,000
			3층	1	308,337,000	294,239,091	29,423,909	632,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128,000,000
			4층	1	308,337,000	299,693,637	29,969,363	638,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134,000,000
			5~9층	5	308,337,000	318,784,546	31,878,454	659,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139,000,000
			10~19층	10	308,337,000	330,602,728	33,060,272	672,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136,000,000
			20층이상	3	308,337,000	342,420,910	34,242,090	685,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141,000,000
125.8820	7	205동2,3,4호 206동1,2,3,4호	1층	7	390,330,000	381,518,182	38,151,818	810,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162,000,000
152.5154	8	206동3,4호	20층이상	2	472,908,000	683,720,000	68,372,000	1,225,000,000	122,000,000	122,000,000	122,000,000	122,000,000	122,000,000				615,000,000
		205동1,2,3,4호 206동1,2호	10~19층	2	472,908,000	690,083,637	69,008,363	1,232,000,000	123,000,000	123,000,000	123,000,000	123,000,000	123,000,000				617,000,000
			20층이상	4	472,908,000	700,992,728	70,099,272	1,244,000,000	124,000,000	124,000,000	124,000,000	124,000,000	124,000,000				624,0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90.8184A	99.6429A	99.4327B	125.8820	152.5154
약식표시	90A	99A	99B	125	152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남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실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람.(주택법시행령 제60조)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등]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5자리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설계 등 인 · 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향후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 (연체료 납부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중도금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 및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및 잔금 선납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격이 적용됨.
- 본 아파트의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선납에 대한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최하층 주택배정 세대는 1층에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등으로 일반분양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을 최하층으로 함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90A	99A	99B	125	152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23	16	4			43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2	17	4			43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30%)	4	2	1			7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3	2				5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경기도 6개월미만 거주자(50%)	6	5	1			12
합계		58	42	10			11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또한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다자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 · 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주의 형제 · 자매 · 장인 · 장모 · 시아버지 · 시어머니 · 며느리 · 사위 · 친척 · 지인 등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은 특별공급 신청자격 없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다자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주와 다른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관한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17호, 2018.02.26.개정)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하남 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미달시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한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제한이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는 신청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5조에 따라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공급함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견본주택 내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석에 비치) ※ 가점기준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하나, 추첨일의 상황에 따라 당사에서 임의로 추첨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하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거주자에게 공급함.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_별표1

배 점 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준	배점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임신중에 있는 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0년미만	15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5년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인천 · 경기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 · 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 공급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견본주택에서는 당첨자만 선정함(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 입회하에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세대는 일반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유의사항	–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 04. 26)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하남시 1년 이상(2017.04.26.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이상 (2017.10.26.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거주자에게 공급함. 동일 순위 내에서 하남시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수도권 접수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배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차순위 공급세대 배분방식과 공급순서 또한 선순위와 동일함)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본 주택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 47조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 가능)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접수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증액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1순위 당해지역 거주자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해당지역 계속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제한됨.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예: 수원시 → 하남시)에는 합산이 가능하나, 경기도 외 타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으로 전입한 경우(예 : 하남시→ 서울특별시→ 하남시)에는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하여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경기도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하나,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85㎡초과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50% / 추첨제 5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하남시 (1년이상거주) / 경기도 (6개월이상거주)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미만 거주)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하남시 및 경기도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면적 변경없이 청약가능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신 청 자 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함)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봄.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 청약 가점 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 가점제 점수는 상기의 "가점점수 선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산정 함.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하남시 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단, 만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가점제 신청자에게 공급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초과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제로, 50%를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함. • 본 주택은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가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하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거주자에게 공급함.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하남 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 청약자(하남 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 포함) 중 낙첨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동일 순위 내에서 하남시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수도권 접수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배율을 적용 배부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차순위 공급세대 배분방식과 공급순서 또한 선순위와 동일함.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가점제 청약접수자 미달시 추첨제 청약접수자가 입주자로 선정됨)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가점제로 입주자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자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 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하고,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hillstate.co.kr)에 공개함.

Ⅳ 청약 신청방법

■ 특별공급 청약 방법

구 분	신청 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신청 방법
특별공급	다자녀 / 노부모부양자	하남시/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018.05.02(수) 10:00 ~ 14:00	견본주택 방문 접수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 자격요건과 특별공급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특별공급 신청일에 견본주택으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람) • 신청장소 : 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2-9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 (서약서로 대체)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www.apt2you.com)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일반공급 청약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2순위)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구 분	신청 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일반공급	1순위	하남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018. 05. 03. (목)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2순위		2018. 05. 04 (금) 08:00 ~ 17:30		

※ 1순위 청약시 유의사항
–"해당지역(하남시,경기도)"에 전입제한일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하남시,경기도)" 거주자라 하더라도 전입제한일 이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 (위반시 부적격처리)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인터넷청약」⇒「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 분		구 비 사 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Ⅴ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일정

구 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특별공급	• 일시 : 2018.05.02.(수) 17:00시 이후 • 장소 : 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www.hillstate.co.kr) 게재 ※ 특별공급 청약신청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추첨 이후 견본주택 내 당첨자 리스트 게재	• 일시 : 2018. 05. 11(금)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개별조회) : www.apt2you.com(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홈페이지(www.hillstate.co.kr.)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의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됨
일반공급	• 일시 : 2018. 05. 11(금) • 장소 : 홈페이지 게재 (예비 당첨자 포함)	

※ 특별공급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 · 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에서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수와 미계약 동 · 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동 사유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동 · 호수배정 추첨전에 계약할 주택을 선택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를 배정받은 주택의 당첨자로 인정되며, 기 당첨된 주택의 당첨사실은 무효처리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여부는 홈페이지(www.hillstat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8. 05. 11. ~ 2018. 05. 20. (10일간)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조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전화(ARS)		서비스종료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제공일시	2018. 05. 11.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한 주택청약당첨조회 서비스가 2017.6.15.부터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Ⅵ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8.05.23.(수)~05.25(금), 2018.05.28.(월)~05.29(화) 5일간, 10:00 ~ 16:00	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2-9번지

※ 2018.05.26.(토)~05.27(일)은 당첨자 계약을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 임시폐관)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구비 사항	비 고
공통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1부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 계약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외국인의 경우 서명인증서
	○		• 인감도장	본인서명확인서 제출한 경우 서명으로 대체
	○		• 주민등록표등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 주민등록표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1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 시)
		○	• 대리 계약시 – 상기서류 외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위임장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일반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 직계존 · 비속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 ·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문의 1577-5811

하남 포웰시티 C3 BL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03.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8.04.26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입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의거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자(2017.04.26.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일반공급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이상 거주한자(2017.10.26.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20%를 공급(하남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택지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이상인 경우에 한정)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청약 접수시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수의 100%를 가점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수의 50%를 가점제, 50%를 추첨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함.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구 주택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재26조 제1항에 의거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illstat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하남시)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의 당해 사업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며, 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 규칙 제2조 7호의 각목
-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즉, 지역(직장)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입주대상자는 각각 사업계획승인일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자격이 제한됨. (단, 사업계획승인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 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전역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부산기장군(민간택지는 제외됨) – 공공택지 / 부산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부산진구 – 전역
  -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분당구 · 대구 수성구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조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6항에 따라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및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모집공고일 현재) 이상인 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국내에 거주 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 복무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가능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일로부터 5년, 전용면적 85㎡초과는 당첨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해당,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재당첨이 제한됩니다.(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 하여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후, 접수하여 당첨자 발표 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본 아파트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확장형 기준 90B, 99A, 99B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8.03.2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주요 일정

공고	접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계 약 (본 당첨자만 해당)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특별공급	일반공급		
2018. 04. 26(목)	2018.05.02(수) (10:00~14:00)	2018.05.03(목) (08:00~17:30)	2018.05.04(금) (08:00~17:30)	2018.05.02(수) (17:00 이후)	2018.05.11(금) (08:00~17:30)	2018.05.14.(월)~05.19(토) (10:00~17:00)	2018.05.23.(수)~05.25(금) 2018.05.28.(월)~05.29(화) (10:00~17:00)
현대건설홈페이지 (www.hillstate.co.kr)	[견본주택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견본주택 *특별공급 동 · 호수 추첨 결과는 2018.5.11.(금) 발표	*견본주택 *현대건설 홈페이지 (www.hillstate.co.kr)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견본주택 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2-9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 주택과 – 16737호(2018. 04. 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C3 BL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2~29층, 총 9개동, 총 7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2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구분	공동주택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 수				저층우선 배정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다자녀	노부모		
민영 주택	2018000603-01	90.8184A	90A	90.8184	25.4416	116.2600	53.0374	169.2974	53.1500	86	8	2	76	3
	2018000603-02	90.2406B	90B	90.2406	27.4176	117.6582	52.7000	170.3582	52.8100	173	17	5	151	6
	2018000603-03	90.6117T	90T	90.6117	28.1317	118.7434	52.9167	171.6601	53.0300	4	0	0	4	2
	2018000603-04	99.6429A	99A	99.6429	27.8559	127.4988	58.1909	185.6897	58.3100	414	41	12	361	15
	2018000603-05	99.4327B	99B	99.4327	28.3567	127.7894	58.0681	185.8575	58.1900	111	11	3	97	4
	2018000603-06	152.5154	152	152.5154	47.0936	199.6090	89.0682	288.6772	89.2600	2	0	0	2	0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공급 세대 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VAT	계	1차(10%)	2차(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 지정일
									계약시	2018.06.25	2018.09.20	2019.02.20	2019.07.22	2019.12.20	2020.05.20	2020.10.20	
90.8184A	86	306동3호 307동3,4호	1층	2	284,815,000	220,168,182	22,016,818	527,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11,000,000
			2층	3	284,815,000	225,622,728	22,562,272	53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09,000,000
			3층	3	284,815,000	231,077,273	23,107,727	539,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15,000,000
			4층	3	284,815,000	235,622,728	23,562,272	54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12,000,000
			5~9층	15	284,815,000	251,986,364	25,198,636	562,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14,000,000
			10~19층	30	284,815,000	261,986,364	26,198,636	573,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17,000,000
			20층이상	30	284,815,000	271,986,364	27,198,636	584,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20,000,000
90.2406B	173	306동2호 307동2호 308동3호	1층	3	282,993,000	221,824,546	22,182,454	527,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11,000,000
			2층	3	282,993,000	227,279,091	22,727,909	53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09,000,000
			3층	3	282,993,000	232,733,637	23,273,363	539,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15,000,000
			4층	3	282,993,000	237,279,091	23,727,909	54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12,000,000
			5~9층	15	282,993,000	253,642,728	25,364,272	562,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14,000,000
			10~19층	30	282,993,000	263,642,728	26,364,272	573,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17,000,000
			20층이상	30	282,993,000	273,642,728	27,364,272	584,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20,000,000
		301동3호 302동2호 303동4호	1층	2	282,993,000	237,279,091	23,727,909	54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12,000,000
			2층	3	282,993,000	242,733,637	24,273,363	550,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10,000,000
			3층	3	282,993,000	248,188,182	24,818,818	556,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16,000,000
			4층	3	282,993,000	252,733,637	25,273,363	561,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13,000,000
			5~9층	15	282,993,000	269,097,273	26,909,727	579,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23,000,000
			10~19층	30	282,993,000	280,006,364	28,000,636	591,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119,000,000
			20층이상	30	282,993,000	290,915,455	29,091,545	603,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23,000,000
90.6117T	4	309동1,2호	1층	2	284,172,000	498,025,455	49,802,545	832,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168,000,000
			2층	2	284,172,000	498,025,455	49,802,545	832,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168,000,000
99.6429A	414	301동1호 302동4호 308동1,2,4호	1층	2	312,466,000	263,212,728	26,321,272	602,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22,000,000
			2층	5	312,466,000	268,667,273	26,866,727	608,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28,000,000
			3층	5	312,466,000	275,030,910	27,503,090	615,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27,000,000
			4층	5	312,466,000	280,485,455	28,048,545	621,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125,000,000
			5~9층	25	312,466,000	298,667,273	29,866,727	641,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129,000,000
			10~19층	50	312,466,000	310,485,455	31,048,545	654,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134,000,000
			20층이상	50	312,466,000	322,303,637	32,230,363	667,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139,000,000
		301동2호 302동1,3호 303동1,2,3,5호	1층	2	312,466,000	275,030,910	27,503,090	615,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27,000,000
			2층	7	312,466,000	280,485,455	28,048,545	621,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125,000,000
			3층	7	312,466,000	286,849,091	28,684,909	628,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132,000,000
			4층	7	312,466,000	293,212,728	29,321,272	635,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131,000,000
			5~9층	35	312,466,000	311,394,546	31,139,454	65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135,000,000
			10~19층	70	312,466,000	323,212,728	32,321,272	668,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140,000,000
			20층이상	70	312,466,000	335,030,910	33,503,090	681,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137,000,000
		301동4호 304동1,2호	2층	3	312,466,000	286,849,091	28,684,909	628,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132,000,000
			3층	3	312,466,000	293,212,728	29,321,272	635,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131,000,000
			4층	3	312,466,000	298,667,273	29,866,727	641,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129,000,000
			5~9층	15	312,466,000	317,758,182	31,775,818	662,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134,000,000
			10~19층	30	312,466,000	329,576,364	32,957,636	675,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139,000,000
			20층이상	20	312,466,000	342,303,637	34,230,363	689,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145,000,000
99.4327B	111	307동1호	2층	1	311,823,000	263,797,273	26,379,727	602,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22,000,000
			3층	1	311,823,000	269,251,819	26,925,181	608,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28,000,000
			4층	1	311,823,000	275,615,455	27,561,545	615,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27,000,000
			5~9층	5	311,823,000	292,888,182	29,288,818	634,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130,000,000
			10~19층	10	311,823,000	304,706,364	30,470,636	647,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135,000,000
			20층이상	10	311,823,000	316,524,546	31,652,454	660,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132,000,000
		305동1,2호 306동1호	1층	1	311,823,000	275,615,455	27,561,545	615,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27,000,000
			2층	3	311,823,000	281,070,000	28,107,000	621,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125,000,000
			3층	3	311,823,000	287,433,637	28,743,363	628,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132,000,000
			4층	3	311,823,000	293,797,273	29,379,727	635,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131,000,000
			5~9층	15	311,823,000	311,979,091	31,197,909	65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135,000,000
			10~19층	30	311,823,000	323,797,273	32,379,727	668,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140,000,000
			20층이상	28	311,823,000	335,615,455	33,561,545	681,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137,000,000
152.5154	2	304동1,2호	20층이상	2	478,318,000	696,074,546	69,607,454	1,244,000,000	124,000,000	124,000,000	124,000,000	124,000,000	124,000,000				624,0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90.8184	90.2406	90.6117	99.6429	99.4327	152.5154
약식표시	90A	90B	90T	99A	99B	152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남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실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람.(주택법시행령 제60조)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등]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 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5자리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설계 등 인 · 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향후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 (연체료 납부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중도금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 및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및 잔금 선납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격이 적용됨.

• 본 아파트의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선납에 대한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최하층 주택배정 세대는 1층에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등으로 일반분양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을 최하층으로 함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90A	90B	90T	99A	99B	152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4	8		21	6		39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4	9		20	5		38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30%)	1	1		3	1		6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1		3	1		5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경기도 6개월미만 거주자(50%)	1	3		6	1		11
합 계		10	22	0	53	14		9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또한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다자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 · 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주의 형제 · 자매 · 장인 · 장모 · 시아버지 · 시어머니 · 며느리 · 사위 · 친척 · 지인 등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은 특별공급 신청자격 없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다자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주와 다른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관한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17호, 2018.02.26.개정)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하남 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미달시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한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제한이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는 신청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5조에 따라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공급함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견본주택 내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석에 비치) ※ 가점기준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하나, 추첨일의 상황에 따라 당사에서 임의로 추첨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하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거주자에게 공급함.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_별표1

배 점 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임신중에 있는 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0년미만	15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5년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인천 · 경기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 · 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 공급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견본주택에서는 당첨자만 선정함(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 입회하에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세대는 일반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유의사항	–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 04. 26.)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하남시 1년 이상(2017.04.26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이상 (2017.10.26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거주자에게 공급함. 동일 순위 내에서 하남시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수도권 접수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배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차순위 공급세대 배분방식과 공급순서 또한 선순위와 동일함)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본 주택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 47조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 가능)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접수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증액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1순위 당해지역 거주자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해당지역 계속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제한됨.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예: 수원시 → 하남시)에는 합산이 가능하나, 경기도 외 타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으로 전입한 경우(예 : 하남시 → 서울특별시→ 하남시)에는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하여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경기도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하나,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85㎡초과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50% / 추첨제 5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하남시 (1년이상거주) / 경기도 (6개월이상거주)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미만 거주)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하남시 및 경기도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면적 변경없이 청약가능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신 청 자 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함)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봄.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 청약 가점 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 가점제 점수는 상기의 "가점점수 선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산정 함.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하남시 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단, 만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가점제 신청자에게 공급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초과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제로, 50%를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함. • 본 주택은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가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하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거주자에게 공급함.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하남 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 청약자(하남 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 포함) 중 낙첨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동일 순위 내에서 하남시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수도권 접수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배율을 적용 배부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차순위 공급세대 배분방식과 공급순서 또한 선순위와 동일함.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가점제 청약접수자 미달시 추첨제 청약접수자가 입주자로 선정됨)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가점제로 입주자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자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 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하고,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hillstate.co.kr)에 공개함.

Ⅳ 청약 신청방법

- 특별공급 청약 방법

구 분	신청 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신청 방법
특별공급	다자녀 / 노부모부양자	하남시/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018.05.02(수) 10:00 ~ 14:00	견본주택 방문 접수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 자격요건과 특별공급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특별공급 신청일에 견본주택으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람) • 신청장소 : 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2-9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 (서약서로 대체)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일반공급 청약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2순위)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구 분	신청 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일반공급	1순위	하남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018. 05. 03. (목)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2순위		2018. 05. 04 (금) 08:00 ~ 17:30		

※ 1순위 청약시 유의사항
– "해당지역(하남시,경기도)"에 전입제한일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하남시,경기도)" 거주자라 하더라도 전입제한일 이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 (위반시 부적격처리)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특화서비스 「주택청약」⇒「인터넷청약」⇒「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분		구 비 사 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Ⅴ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일정

구 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특별공급	• 일시 : 2018.05.02.(수) 17:00시 이후 • 장소 : 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www.hillstate.co.kr) 게재 ※ 특별공급 청약신청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추첨 이후 견본주택 내 당첨자 리스트 게재	• 일시 : 2018. 05. 11(금)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개별조회) : www.apt2you.com(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홈페이지(www.hillstate.co.kr)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의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됨
일반공급	• 일시 : 2018. 05. 11(금) • 장소 : 홈페이지 게재 (예비 당첨자 포함)	

※ 특별공급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 · 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에서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수와 미계약 동 · 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동 사유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동 · 호수배정 추첨전에 계약할 주택을 선택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를 배정받은 주택의 당첨자로 인정되며, 기 당첨된 주택의 당첨사실은 무효처리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여부는 홈페이지(www.hillstat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8. 05. 11. ~ 2018. 05. 20. (10일간)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조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전화(ARS)		서비스종료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제공일시	2018. 05. 11.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한 주택청약당첨조회 서비스가 2017.6.15.부터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Ⅵ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8.05.23.(수)~05.25(금), 2018.05.28.(월)~05.29(화) 5일간, 10:00 ~ 16:00	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2-9번지

※ 2018.05.26.(토)~05.27(일)은 당첨자 계약을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 임시폐관)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비 고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1부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 계약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외국인의 경우 서명인증서
	○		• 인감도장	본인서명확인서 제출한 경우 서명으로 대체
	○		• 주민등록표등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 주민등록표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1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 시)
		○	• 대리 계약시 – 상기서류 외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위임장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일반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 직계존 · 비속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 ·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동 · 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1차계약금) 가상계좌	하나은행	201-920102-66737	(주)하나자산신탁
분양대금(2차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가상계좌	하나은행	동호수별 생성(계약서 명시)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약정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해당 금융기관 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나은행 201-910015-98904 (주)하나자산신탁)로관리됩니다.

• 분양대금 1차 계약금 납부: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 수납불가) (예시 301동 4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3010401홍길동"으로 기재)

• 분양대금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 계약체결 시 세대별 별도 생성되어 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 (주)하나자산신탁은 자금관리신탁계약에 의한 분양사업자로 분양 수입금을 관리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60%범위 내에서 이자 후불제 조건(해당형별 : 90.8184, 90.2406, 90.6117, 99.6429, 99.4327)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152.5154형은 중도금을 자납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님,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차, 2차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알선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Ⅶ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 입	구 분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시	2018. 09. 20	입주지정일
90A	기본확장형	12,750,000	1,275,000	1,275,000	10,200,000
90B	기본확장형	14,010,000	1,401,000	1,401,000	11,208,000
	가족공간강화형	15,880,000	1,588,000	1,588,000	12,704,000
	학습공간강화형	19,350,000	1,935,000	1,935,000	15,480,000
	침실공간강화형	17,640,000	1,764,000	1,764,000	14,112,000
	가족+학습공간강화형	21,250,000	2,125,000	2,125,000	17,000,000
	가족+침실공간강화형	19,510,000	1,951,000	1,951,000	15,608,000
90T	기본확장형	12,090,000	1,209,000	1,209,000	9,672,000
99A	기본확장형	13,240,000	1,324,000	1,324,000	10,592,000
	가족공간강화형	15,830,000	1,583,000	1,583,000	12,664,000
99B	기본확장형	14,160,000	1,416,000	1,416,000	11,328,000
	현관다이닝 통로 확보형	14,300,000	1,430,000	1,430,000	11,440,000
152	기본확장형	19,580,000	1,958,000	1,958,000	15,664,000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추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입주시 관할관청에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및 확장면적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새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및 도어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수 있으며 인접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시 대피공간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세대의 경우 일부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중 새시 단열재 추가설치로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 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결빙,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됨)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기본형(비확장)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제공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 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상부세대가 확장일 경우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마감,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 전 외부새시 설치 후 입주하셔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외부새시 미설치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거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 선택 품목 (유상 옵션)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구분		대수	적용(개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 고
						계약시	2018. 09. 20	입주지정일	
90A	ALT1	기본확장형	6대	거실(1개), 주방(1개), 침실(4개)	9,130,000	913,000	913,000	7,304,000	
	ALT2	부분	3대	거실(1개), 주방(1개), 침실(1개)	5,270,000	527,000	527,000	4,216,000	
90B	ALT1	기본확장형	6대	거실(1개), 주방(1개), 침실(4개)	9,130,000	913,000	913,000	7,304,000	
	ALT2	침실공간강화형, 학습공간강화형	5대	거실(1개), 주방(1개), 침실(3개)	7,810,000	781,000	781,000	6,248,000	
	ALT3	부분	3대	거실(1개), 주방(1개), 침실(1개)	5,270,000	527,000	527,000	4,216,000	
90T	ALT1	기본확장형	5대	거실(1개), 주방(1개), 침실(3개)	7,920,000	792,000	792,000	6,336,000	
	ALT2	부분	3대	거실(1개), 주방(1개), 침실(1개)	5,720,000	572,000	572,000	4,576,000	
99A	ALT1	기본확장형, 가족공간강화형	6대	거실(1개), 주방(1개), 침실(4개)	9,230,000	923,000	923,000	7,384,000	
	ALT2	부분	3대	거실(1개), 주방(1개), 침실(1개)	5,720,000	572,000	572,000	4,576,000	
99B	ALT1	기본확장형, 현관다이닝통로확보형	5대	거실(1개), 주방(1개), 침실(3개)	7,920,000	792,000	792,000	6,336,000	
	ALT2	부분	3대	거실(1개), 주방(1개), 침실(1개)	5,720,000	572,000	572,000	4,576,000	